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수정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58
------	------

발의일자 : 2021. 2. 8.

발 의 자 : 강수정 의원

찬 성 자 : 이경옥, 김용술 의원

1. 제안이유

질문요지서 송부 기간 ‘24시간 전까지’에 토요일·공휴일 제외하고 일괄 질문·답변 및 일문일답에 대한 질문시간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질문요지서 송부기간 “24시간 전까지”에 토요일·공휴일 제외 (안 제 65조의2)
- 나.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 시간은 답변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 (안 제65조의2)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순화 (안 제1조~제8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일부개정 조례안 : 별도 첨부
- 2)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 첨부
- 3) 입법예고 : 2021. 2. 8. ~ 2. 15.
-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등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일”을 “전날”로 한다.

제9조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16조 후단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명시하여야”를 “분명하게 밝혀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한다.

제19조의4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25조 중 “저촉되는”을 “어긋나는”으로, “숫자 기타”를 “숫자,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 중 “의결일로부터 5일이내”를 “의결한 날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9조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전일”을 “전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는 범위 안”을 “않는 범위”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38조 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약간인”을 “몇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44조제1항제7호 중 “제반”을 “모든”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5일 이내”를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거절하여”를 “거절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서는”을 “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 공청회에 관하여”를 “그 밖의 공청회에”로 한다.

제56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할 때”를 “긴급한 경우”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9조 본문 중 “비공개회의록 기타”를 “비공개회의록, 그 밖에”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3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6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0조 제3항”을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65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정질문은 일괄질문·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제2항 전단 중 “날로”를 “날”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질병 기타”를 “질병, 그 밖의”로, “기일내”를 “기일 내”로 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기일내”를 “기일 내”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4조제1항제2호 중 “신문·잡지·간행물·기타”를 “신문·잡지·간행물·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깍연”을 “흡연”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일”을 “그날”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의장·위원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의장·위원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않는 의원)”으로 한다.

제76조 중 “의원·관계공무원 기타”를 “의원·관계공무원, 그 밖의”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녹음·녹화·촬영”을 “녹음, 녹화, 촬영”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3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전단 중 “동조”를 “같은 조”로, “날로”를 “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를 “집회한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제84조 중 “초일”을 “첫날”로 한다.

제85조 중 “아니하는 범위안”을 “않는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u>관하여</u> <u>필요</u>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생략)</p> <p>② 의장 선거 등의 직무대행자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u>아니</u>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 ⑤ (생략)</p> <p>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u>제3항 내지 제5항</u>의 방법으로</p>	<p>제1조(목적) ----- ----- <u>등에 따라</u> ----- ----- <u>필요</u> ----- ----- -----.</p> <p>제6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u>않을</u>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u>제3항부터 제5항까지</u>-----</p>

부의장을 선거한다. ,

제7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생략)

② 의장 총선거후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 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9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생략)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7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날-----
-----.

제9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10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고 -----.

제16조(의사일정의 변경) -----

----- 않고 -----
-----.

제19조의5(조례안 예고) ① (생략)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생략)

제22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의안의 정리) 본 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27조(발언의 허가) ① (생략)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의5(조례안 예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없으면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받아야 ----.

제25조(의안의 정리) -----
----- 어긋나
는 ----- 숫자, 그 밖에-----

-----.

제26조(의안의 이송) -----
----- 의결한 날
부터 5일 이내-----
--.

제27조(발언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않은 -----

-----.

③ (생략)

제29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
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
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
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
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생
략)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2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생
략)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서면 으로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발언의 계속) -----

----- 않으며 -----

-----.

제31조(발언회수의 제한) -----
----- 한정하여 -----
-----.

-----.

제32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현행
과 같음)

② -----

----- 범위 -----
-----.

제32조의2(5분 자유발언) ① (현행
과 같음)

② -----
----- 전날 -----
-----.

③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를 정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되,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의중에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생략)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을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8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0조(표결방법) ① ~ ③ (생략)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③ -----
----- 않는 범위 -----

-----.

제36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현행과 같음)

② --- 2명 -----

③ -----
않고 -----.

제38조(표결의 참가) -----
----- 않은 -----

-----.

제40조(표결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없으면 -----
-----.

제41조(투표절차) ① (생략)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사무국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제44조(회의록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 6. (생략)
7. 제반 보고사항
8. ~ 13. (생략)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제4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 5일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

제41조(투표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몇 명-----

③-----

않을-----.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회의록 작성)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모든 -----
8.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5일 이내-----
-----.

② -----

----- 않고

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생략)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제,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 절차,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5조(공청회) ① (생략)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

----- 없으면 -----
----- 거절해-----.

③ -----

----- 해서는 -----
-----.

④ ----- 않은 -----
-----.

-----.

⑤ (현행과 같음)

⑥ ----- 그 밖에 -----
-----.

제55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④ (생략)

⑤ 기타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② (생략)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8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 10. (생략)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③ (생략)

제59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그 밖의 -----
----- 받아야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의 공청회에 -----

--.

제5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긴급한 경우-----
-----.

제58조(위원회 회의록) ① -----

-----.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9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
비공개회의록, 그 밖에 -----
----- 없으면
-----.

하는 경우에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1인의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략)

제66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생략)

② 기타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생략)

② 피심위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할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 날-----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

--.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질병, 그 밖의 ----- 기일 내-----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생략)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73조(경호) ①·② (생략)

③ 기타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4조(회의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깍연

5. (생략)

6. 기타 폭력의 행사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일 내-----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3조(경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
-----.

제74조(회의질서유지) ① -----

1. (현행과 같음)

2. -----
----- 신문·잡지·간행물·그 밖의 -----

3. ----- 않은 -----

4. ----- 흡연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② -----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생략)

제75조(의장·위원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생략)

제76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기타의 안심의에 필요한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7조(방청) ① (생략)

② 기타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8조(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 ① (생략)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따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

그날-----
-----.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의장·위원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않는 의원) (현행과 같음)

제76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
----- 의원·관계공무원, 그 밖
의-----
-----.

제77조(방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의 -----
-----.

제78조(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녹음, 녹화, 촬영 -----

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항에 따라 -----

--.

③ -----

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제8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79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

----- . -----

----- 않으며 -----
----- .

④ 제3항-----

----- .

⑤----- 제4항-----

제8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

----- 같은 조
----- 날-----
----- . -----
----- .

② ----- 제2항에 따른 -----

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회의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기간의 기산일)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85조(규정등 제정) 의회는 이 규칙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집회한 날부터 3일 이내-----.

제84조(기간의 기산일) -----
----- 첫날-----
-----.

제85조(규정등 제정) -----

않는 범위-----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